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28
----------	-----

2020. 6. 24.(수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20년 5월 29일

다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: 2020년 6월 10일

(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국장 민경찬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난·재해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, 재난발생 역시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재난·재해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유도하고,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9호)
 -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 중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련된 재난안전 사항 반영
-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(안 제12조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경분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교육안전의 범위에 홍수·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항)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재난안전 : 교육활동 중의 홍수·지진·폭염 및 폭설·황사 등 자연재난
과 화재·붕괴·폭발·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

제12조제3항 중 “부교육감, 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을 “부교육감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① 이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재난안전 : 교육활동 중의 홍수 · 지진 · 폭염 및 폭설 · 황사 등 자연재난과 화재 · 붕괴 · 폭발 · 미세먼지 등 사회 재난에 관련된 안전</u></p>
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<u>부교육감, 교육국장, 행정국장과 교육안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</u>이 된다.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<u>부교육감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</u>----- 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**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** [시행 2019. 12. 13.] [법률 제16666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3. "재난관리"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4. "안전관리"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□ **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** [시행 2019. 3. 1.] [충청북도조례 제4228호, 2019. 2. 8., 일부개정]
제5조의2(국의 설치)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,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.

제5조의3(기획국) ①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1.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에 관한 사항